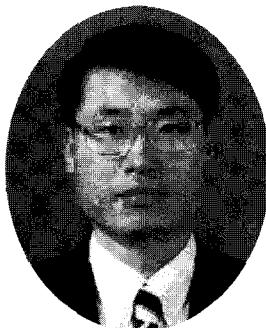




한·싱가폴 FTA의 주요내용과 의의



김석오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전문관)

■ 목 차 ■

I. 서

II. 상품분야 주요내용

III. 한·싱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IV. 맺는 말

I. 서

지난 11월 30일 노무현 대통령과 리시엔룽 싱가포르 총리는 라오스에서 개최된 ASEAN(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동 협정은 법률적 검토 및 국회비준 절차 등을 거쳐 빠르면 2005년 하반기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싱가폴 양국은 지난 '04년 1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부간 협상을 통하여 상품무역을 비롯한 서비스·투자·정부조달·기술표준 적합성 상호인정(MRA)·지적재산권·협력 등 9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협상개시 불과 1년여만에 타결하였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자유무역국인 싱가포르를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로,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연계거점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 FTA 체결로 1994년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을 계기로 지구상에 불고 있는 'FTA 물결'에 본격 합류하게 되었다.

FTA는 양국의 산업구조·경쟁력·교역특성을 고려하여 상대국과의 협상에 의해 그 주요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싱 FTA는 2004년 4월부터 발효된 한·칠레 FTA와 관세양허, 원산지규정, 세이프가드, 통관절차 등 여러 측면에 걸쳐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이하에서는 한·싱 FTA의 핵심내용인 관세분야 협정문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한·싱 FTA 체결의 효과 및 의의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II. 상품분야 주요내용

1. 관세양허

가. 우리나라의 관세양허

우리나라는 싱가폴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 발효후 10년이내에 총 품목

수의 91.6%에 해당하는 10,315개 품목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게 된다. 이 중 59.7%에 해당하는 6,724개 품목은 협정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즉시 무세화 된다. 이를 공산품과 농수산물로 구분하여 보면, 공산품의 관세철폐율은 97.4%로서 거의 대부분의 공산품이 관세철폐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이 중 즉시 철폐는 68.8%에 이르고 있다. 이와 달리 농수임산물의 10년내 관세철폐율은 66.5%로서 공산품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다. 이는 경쟁력이 극히 취약한 국내 농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표1〉 참조).

관세가 5년에 걸쳐 철폐되는 품목은 협정 발효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평균 16.7%씩 단계적으로 감축된 후 협정발효 5년 후에 무세화 되며, 10년 철폐품목은 매년 평균 9.1%씩 감축되다가 10년 후에 완전 무세화 된다(〈표2〉 참조).

〈표1〉 대싱가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양허 개요

양허 카테고리	전 체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즉시 철폐	6,724 (59.7)	6,304 (68.8)	232 (16.0)	56 (13.8)	132 (53.7)
5년 철폐	2,009 (17.8)	1,487 (16.2)	358 (24.7)	135 (33.3)	29 (11.8)
10년 철폐	1,582 (14.1)	1,125 (12.3)	377 (26.0)	37 (9.1)	43 (17.5)
소 계	10,315 (91.6)	8,916 (97.4)	967 (66.6)	228 (56.2)	204 (82.9)
양허제외	946 (8.4)	242 (2.6)	484 (33.4)	178 (43.8)	42 (17.1)
합계	11,261	9,158	1,451	406	246

〈표2〉 관세양허물품의 관세감축율(백분율)

	Y0	Y1	Y2	Y3	Y4	Y5	Y6	Y7	Y8	Y9	Y10
즉시	100										
5년 철폐	16.7	33.3	50.0	66.7	83.3	100					
10년 철폐	9.1	18.2	27.3	36.4	45.5	54.5	63.6	72.7	81.8	90.9	100

〈표3〉 우리나라의 관세양허 유형별 주요품목

양허 카테고리	주 요 품 목
즉시 철폐	원유, 천연가스, 반도체, 컴퓨터, 유선통신기기, 휴대폰, 가죽, 신발, 가구, 원구, 자동차, 공작기계, 종우, 원면 등 섬유원료, 원광석, 종이·제지, 철강, 비금속제품, 철도차량, 항공기
5년 철폐	칠면조 등 산동물, 음료베이스, 한약재, 고무벨트, 가죽제품, 패각공예품, 실리콘수지, 안전유리, 재봉기, 드릴공구, 카메라, 냉장고, VCR, 조명기기
10년 철폐	맥주, 포도주, 제재목, 건조수산물, 견직물, 모직물, 부직포, 향수, 장갑, 우산, 텐트, 음향기기 부품, 영상기록 매체, 배전반, 계측기
제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쌀, 참깨, 정당, 담배, 둔, 농어, 미꾸라지, 합판, 섬유판, 휘발유, 등유 등 석유제품, 벤젠, 톨루엔, 호르몬, 에틸렌, 프로필렌, 염화비닐 수지, 베어링, 축전지

관세가 철폐되는 주요품목들을 보면 먼저, 즉시철폐 품목으로는 반도체·컴퓨터·휴대폰 등 IT관련제품과 자동차·철도차량·항공기 등의 운수장비, 원유·천연가스·원광석 등 기초 원자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시 관세를 철폐하여도 국내산업에 별 영향이 없는 품목들이 이에 해당한다.

5년 철폐 및 10년 철폐 품목들은 경쟁력이 취약하여 일정기간 관세보호가 필요한 품목으로서 냉장고·VCR 등 가전기기(5년 철폐)와 주류·직물·텐트(10년 철폐) 등이 이에 포함된다. 쌀·참깨·쇠고기·닭고기 등 농축수산물과 석유화학제품, 베어링 등 946개 매우

취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관세양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표3〉 참조).

나. 싱가포르의 관세양허

싱가폴은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된다. 싱가폴은 맥주 등 주류 4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이 무세이어서 싱가폴의 관세양허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상품이 추가적으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품무역 분야 이외의 서비스·투자·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는

FTA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양허이익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무역구제조치(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

싱가폴산 수입물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가 마련되었다. 협정체결로 인해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설정하였으나, 그래도 국내산업의 피해 가능성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감안한 것이다. 특히, 공산품의 즉시 관세철폐 비중이 68.8 퍼센트에 이르고 있어 그동안 평균 8%의 관세보호를 받던 일부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safe guard measure)가 도입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싱가폴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

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국내산업에 비해 절대적·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세이프가드조치는 협정에서 정한 특혜관세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거나 일정한 범위 안에서 關稅率의 引上을 그 주요내용으로 한다. 여기서 일정한 범위라 함은 기준세율과 일반실행세율(MFN세율)중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2년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총 4년의 범위내에서 조치를 할 수 있다.

한·싱 FTA의 세이프가드조치는 한·칠레 FTA와 비교하여 그 대상품목과 적용기간에 일부 차이가 있다. 먼저 한·칠레 FTA에서는 세이프가드조치 대상물품은 WTO협정상의 농산물에 한정되나, 한·싱 FTA에서는 모든 양허물품이 그 대상이 된다. 또한 한·칠레 FTA에서는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한·싱 FTA에서는 총 4년으로 제한된다. <표4>는 한·칠 FTA와 한·싱 FTA를 관세법상의 긴급관세제도와 비교한 것이다

<표4> FTA 세이프가드조치 주요내용 비교

양허 카테고리	한·칠 FTA	한·싱 FTA	관세법
대상물품	WTO 협정상 농산물 중 양허품목	양허품목	모든 물품
피해조사 관련조항	조사규정 없음	조사규정 없음	수입증가, 국내시장 점유율, 판매·생산·고용 등의 변화
조치내용	관세인하정지/ 관세율 인상	관세인하정지/ 관세율 인상	관세율 인상, 수량 제한, 구조조정촉진
적용기간제한	제한 규정 없음	2년(연장가능 4년까지)	4년(연장가능 : 8년까지)

3. 특혜원산지기준 도입

한·싱 FTA에서는 양국간의 교역확대·무역창출 및 역외산 물품의 우회수입방지를 위하여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특혜관세를 적용하도록 통일적인 특혜원산지기준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한·싱 FTA 특혜관세는 원산지가 싱가폴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원산지의 인정범위에 따라 적용 관세율이 달라지므로 원산지규정은 특혜관세의 적용과 우회수입 여부를 판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아울러 관세세수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이외에 양국간의 교역·투자관계와 국내산업의 구조개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의 생산활동이 일관생산체제에서 가공단계별로 아웃소싱화 되고 그 생산지역도 한 국가에서 여러 국가로 글로벌화 됨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기준의 설정과 판정이 갈수록 복잡화·고도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원산지 규정의 적용으로 인한 과세마찰과 통상마찰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싱 FTA 원산지규정은 어디까지나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특혜원산지기준이므로 수입물품에 "Made in Singapore"처럼 원산지표시(Origin Marking)를 위한 국내규정(대외무역법령)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가. 원산지결정원칙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이 도입되었다. 완전생산기준은 당해 국가에서 채굴한 광산물(예:철광석)이나 재배·양식·수확한 농수산물(예:과일·

채소·수산물·곡물류)과 국산원료만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실질적 변경기준은 수입재료와 국산재료를 혼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주요특성이 변형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하는 '실질적변형기준'이 도입되었다. 실질적변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거나 이들 기준을 조합하여 적용하며, 각 품목별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협정 부속서에 규정하였다.

먼저, 세번변경기준은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원재료와 제품의 HS번호가 일정 단위이상 변경이 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예컨대, 중국산 주정(HS2207)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소주(HS2208)의 경우 HS 4단위가 변경된다. 이 경우 한·싱 FTA에서 소주의 원산지 인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 적용되므로 소주의 원산지는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된다.

세번변경기준은 HS 품목분류코드가 대부분 물품의 제조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어 일정수준 이상의 가공이 이루어지면 세번이 변경되는 원리를 원산지기준에 반영한 것이다. 한·싱 FTA에서는 농산가공품·석유화학·기계류 등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상당히 많은 품목에 걸쳐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부가가치기준은 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예:45~60% 수준)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부가가치비율은 당해 수입 물품의 가격중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뺀 금액을 수입 물품의 가격으로 나누어서 산출

〈표5〉 한·싱 품목별 원산지인정기준 예시

품명	HS번호	한·싱 FTA	한·칠 FTA
김치	2005.90	CTH+RVC(55)	CTH+RVC(45)
된장	2103.90	CTH+RVC(45)	CTH
인삼차	2106.90	CTH+RVC(45)	CTH
소주 등 주류	2208.90	CTH	CTH+RVC(45)
가죽핸드백	4202.21	CTH	CC
청바지	6203.42	CC + 절단·봉제	CC+국산원단+절단+봉제
신발	6401.10	CTH	CTH or RVC(45)
냉장고	8418.10	CTH+RVC(50)	CTSH
세탁기	8450.11	CTH, except from 8501* RVC(50) * 핵심부품인 모터 (HS8501)는 국산일 것	CTSH+RVC(45)
휴대폰	8525.20	CTH+RVC(50)	CTH+RVC(45)
칼라TV	8529.90	CTH	CTH
반도체메모리	8542.21	CTSH	CTSH+RVC(45)
승용차	8703.22	CTH+RVC(50)	RVC(45)

- 주) 1. CC(Change of Chapter): 2단위 세번변경기준
 2. CTH(Change of Tariff Heading): 4단위 세번변경기준
 3. CTS(Change of Tariff Subheading): 6단위 세 번변경기준
 4. RVC(Regional Value Content): 부가가치기준. *()은 부가가치비율을 의미

된다.¹⁾

부가가치기준과 세번변경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결합기준도 도입되었다. 결합기준은 우회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산지기준을 엄격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예: 조제 식료품, 기계류 등)에 대해 주로 적용된다.

협정 부속서에 규정하고 있는 주요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한·칠 FTA와 비교하여 예시하면 〈표 5〉와 같다.

나. 원산지 인정예외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운송·보관·포장·선별 등을 위한 경미한 가공만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산 밀

1)한·칠 FTA에서의 비원산지재료의 기준가격은 FOB 가격인데 비하여 한·싱 FTA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기준가격은 CIF 가격이다. ※부가가치비율 = (수입물품의 가격-비원산지재료가격)/수입물품의 가격×100

〈표6〉 불인정 공정으로 인한 HS 번호 변경사례

투입원료	생산공정	생산제품
화강암(2516)	분쇄	자갈(2517)
석회석(2521)	분쇄·열처리	시멘트(2523)
페니실린(3003)	포장	소매용페니실린(3004)
폴리에스테르(3907)	혼합	페인트(3208)
원목(4403)	절단	제재목(4407)
안경테(9003)/ 안경렌즈(9001)	조립	안경(9004)

(HS1001)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제분하여 생산한 밀가루(HS1101)의 경우 HS 2단위가 변경되나, 제분작업은 원산지불인정공정(non-qualifying operation)에 해당하므로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특히, HS 품목분류 구조상 분쇄(grinding/crushing) · 혼합(mixing) · 절단(cutting) · 희석(dilution) · 포장(packing) 등 경미한 가공작업만 거친 경우에도 세번이 변경되는 품목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를 구분하여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협정에서 규정하는 주요 원산지불인정공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건조 · 냉동 · 포장 · 병입 · 화물분류
- 단순절단 · 탈각(unshelling) 또는 박편(unflaking) · 탈곡 · 뼈제거 · 제분 · 압착
- 도축 · 염화(salifying) · 가당(sweetening)
- 희석 · 도축 · 단순조립 · 세트구성 · 분해 · 시험 · 품질검사 · 먼지제거 · 도포

참고로 〈표6〉은 불인정 공정으로 인해 HS 번호가 변경되는 사례이다.

한편, 싱가폴에서 생산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은 원산지가 불인정된다. 즉, 싱가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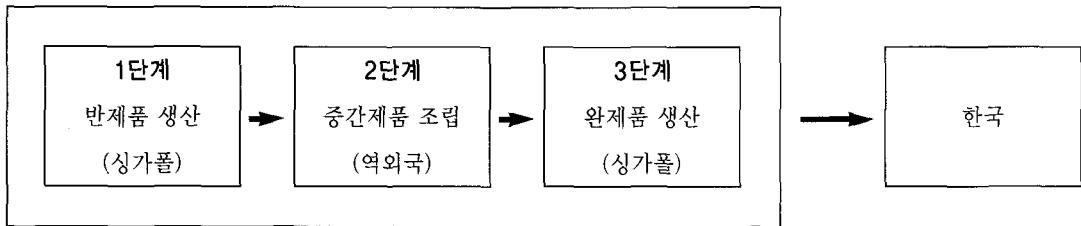
운송된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가 인정되고 특혜관세가 적용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도네시아의 물류기지에서 선적한 싱가폴산 물품은 싱가폴에서 직접 운송된 것이 아니므로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특례

한 · 싱 FTA에서는 한 · 칠 FTA나 국내 관세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역외가공 원산지규정이 특별히 도입되었다. 역외가공은 싱가폴에서 반제품을 생산(1단계)한 후 이를 인니 등 역외에 수출한 후, 조립 등의 공정(2단계)을 거친 후 재수입하여 싱가폴에서 완제품을 생산(3단계)한 경우 3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더하여 1단계의 부가가치도 원산지 판정시 싱가폴 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그림 1〉 참조). 이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은 싱가폴산 원재료를 제외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격이 완제품가격의 40% 이하이어야 하며, 역내에서 수출된 재료는 싱가폴산 물품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제3국산 물품을 수입하여 원상태로 역외공장에 공급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산지결정을 위한 기준은 원칙적으로 당해

[그림 1] 역외가공 흐름도



국에서만 발생한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를 기초로 결정되며, 국산재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일단 역외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된 물품은 원산지가 불인정 된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국내산 물품이라도 외국으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될 경우 관세부과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외가공제도는 다른 나라 FTA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폴의 경우 국토면적이 협소하여 인도네시아 등 인근국가에 공장을 설치하여 제품생산 공정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바, 싱가폴의 지형적 특수성과 이에 따른 수평적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양국간 교역을 실질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별히 도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역외가공 원산지제도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그 대상물품은 국내산업에 영향이 적은 품목으로 전기·전자제품 등 극히 일부 품목에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그 대상지역도 인도네시아의 빈탄·바탐섬 등으로 제한된다. 또한 싱가폴의 수출자는 엄격한 원산지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라. 개성공단 생산물품 원산지인정 특례

한·싱 FTA에서는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

하여 그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간주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개성공단지역을 우리나라 영역으로 간주하고 개성공산 생산품이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싱가폴의 경우 대부분의 수입물품이 무관세이어서 이로 인한 실질적인 특혜관세 혜택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하여 한국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국제협정상의 근거를 최초로 마련하였기 때문에 향후 한·아세안 FTA, 한·일 FTA 등 여타 FTA에서 선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 생산물품의 해외판로가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특혜세율 적용 신청 및 원산지증명절차

싱가폴산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특혜관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신청서 이외에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000불 상당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하다.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이를 제출할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특혜신청서는 일단 수입신고시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싱가폴 세관당국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싱가폴로 수출되는 물품의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는 전국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한·칠 FTA에서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발급토록 하는 원산지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싱가폴의 경우 중계무역국가의 특성상 저가의 동남아산 물품의 우회수입 우려가 높아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싱가폴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한·싱 FTA에서는 수입자가 입증서류 등을 통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원산지의 정확성을 입증할 경우에만 특혜관세를 부여하도록 명시하였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내역서·제조원가내역서·각 재료별 구입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세관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물품을 생산·수출한 생산자·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다. 동 의무를 위반하여 원산지입증에 필요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5. 품목분류·원산지 등의 사전심사제도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또는 원산지 결정과 관련되는 HS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재료가격 계산 등에 대해 의문이 있는 자는 수입전에 세관당국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칠레 FTA에서 도입된 제도와 일부 절차를 제외하고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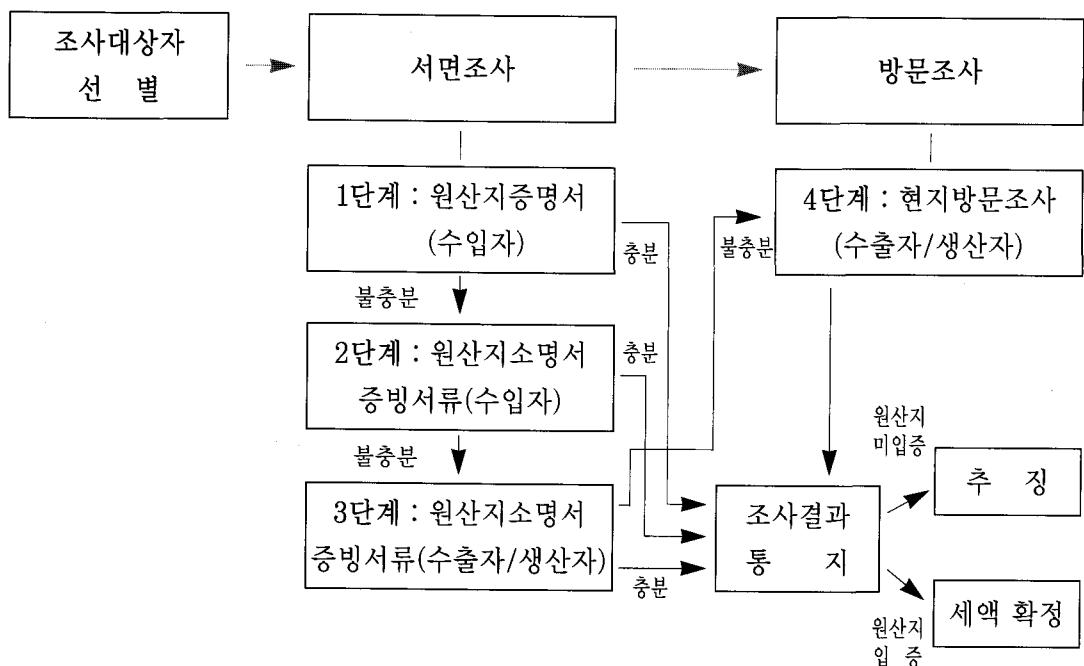
신청자는 수입자뿐만 아니라 싱가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도 될 수 있다. 심사신청을 받은 세관당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사항에 대해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교부일부터 3년이 적용된다.

사전심사서 교부후 사전심사의 기초가 된 사실이 변경되었거나 사전심사상의 판단착오 또는 협정과 국내법령의 개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사전심사한 내용을 직권으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변경 내용은 원칙적으로 그 변경일자 이후에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그러나 사전심사서의 변경내용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변경일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이 적용된다.

사전심사제도는 수입통관후 세관장의 원산지사후검증에 따르는 무역업자의 불안감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무역활동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고 무역업자의 성실납세신고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6. 원산지검증제도

[그림 2] 한·싱 FTA 원산지검증절차 도해



특혜세율의 적용여부와 원산지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당국은 국내 수입자 뿐만 아니라 칠레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 사업장이나 공장을 방문하여 현지검증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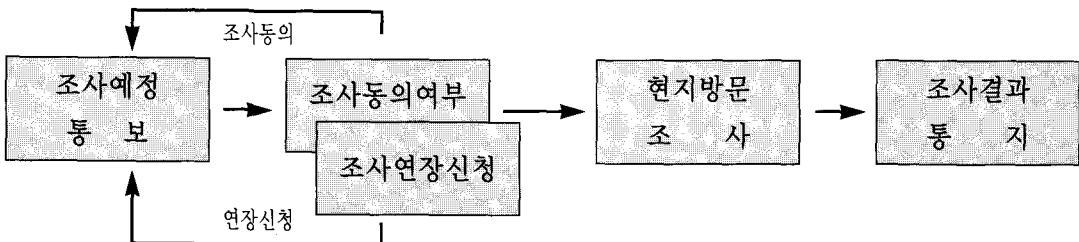
원산지검증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세관당국은 수입자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서도 원산지에 의심이 있는 경우 2단계로 수입자에게 원산지소명서와 증빙서류를 요구하게 된다.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단계로 싱가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소명서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도 원산지의 진실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4단계로 싱가폴

현지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 사업장이나 생산시설을 방문하여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다(<그림2> 참조).

싱가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확인 및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조사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발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회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60일의 범위내에서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그림3> 참조).

원산지검증제도는 제3국산의 우회수입 방지와 원산지 조작을 통한 관세탈루 행위의 차

[그림 3] 현지방문 조사절차



단과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원산지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 원재료원가내역서, 제조공정서 및 생산시설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통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수입자를 통한 확인이 곤란하며, 현지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통한 직접적인 검증만이 가장 정확하게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7. 특혜관세의 적용배제

한·싱 FTA에서는 무역촉진을 위하여 통관 절차는 대폭 간소화 하는 대신에 자유무역체제를 적용하는 불성실한 무역업자와 원산지조작 등을 통하여 관세를 탈루하고 통관질서를 어지럽히는 무역업자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대상에서 배제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먼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수입자, 싱가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출한 서면자료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혜관세의 적용이 배제된다.

둘째, 정당한 사유없이 수입자와 싱가폴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가 세관장이 요청한 관련서류를 지정된 기간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산지증빙자료를 정해진 기간동안 적절히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세째, 세관장이 싱가폴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하거나 현지검증활동에 대한 동의여부를 요청하였음에도 통지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조사에 대한 회신 또는 현지확인조사의 동의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현지확인조사 활동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의 적용이 배제된다.

네째, 수입물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한 경우 비당사국에서 세관관리하에 있었다는 증빙서류 또는 단순 환적작업 이외의 제조·가공활동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이외에 싱가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지속적인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입증하거나 잘못 작성한 때에는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일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의 진실성을 성실하기 입증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동안 특혜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III. 한·싱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우리나라의 대싱가폴 교역규모는 2002년 기준 수출 42억불, 수입 34억불 등 총 76억불 수준으로 약 8억불 정도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무역전체의 2.4%('02년 기준)를 차지하여 싱가폴은 우리나라의 7위 수출국이며, 11위 수입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표6 참조〉).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의 전자제품, 선반 등 수송기계가 포함된 기계류, 석유제품 등이 포함된 광산물 등이다. 주요 수입품은 반도체·컴퓨터 등의 전기전자제품, 정밀화학제품 등 화학공업제품, 석유제품이 포함된 광산물 등이다. 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한다(〈표 7〉 참조).

싱가폴과의 교역구조를 보면 화학공업을 제외한 전기·전자, 기계류·철강금속 등은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이 우위에 있고, 양국이 상

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싱가폴산 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여도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이나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 등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싱가폴의 경우 재수출 비중이 40~50%를 차지하고 있고, 양국간 산업내 교역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FTA 체결로 인한 향후 수입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싱가폴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한 이후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칠 FTA 발효이후 교역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한·싱 양국간의 교역량도 상당한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싱 FTA는 농업분야에서 개방에 따른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싱가폴은 맥주 등 일부 주류 4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관세이므로 FTA 체결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직접적 효과보다는 ASEAN 등 동남아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표6〉 대싱가폴 수출입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3.1~6	(증감율)
	2000	(증감율)	2001	(증감율)	2002	(증감율)		
수 출	5,648	14.8	4,080	-27.8	4,222	3.5	2,088	3.4
수 입	3,723	61.0	3,011	-19.1	3,430	13.9	1,969	25.2
무역수지	1,925		1,067		791		118	

〈표7〉 대싱가폴 주요품목별 수출입현황('02)

(단위 : 백만불, %)

구 분	전기·전자	기계류	광산물	철강금속	화학공업	기타
수 출 (비 중)	2,464 (58)	629 (15)	517 (12)	240 (6)	172 (4)	199(25) (5)
수 입 (비 중)	2,418 (71)	177 (5)	316 (9)	61 (2)	342 (10)	116(39) (3)
무역수지	46	452	201	179	-169	82(△14)

거점을 확보하였는데 더 큰 의의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싱가폴의 선진화된 금융·운송·통신서비스 도입을 통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산업에 대한 싱가폴의 기술이전과 투자 유치 등 장기적으로는 국내 경제활성화에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폴 입장에서 보면, 총 품목수의 91.6%에 해당하는 10,315개 품목에 대해 10년내 관세철폐 혜택을 보기 때문에 상당한 관세양허이익을 누리게 되었고, 한국을 동북아 시장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이익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해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는 선례를 마련함에 따라 개성공단의 활성화와 남북경제발전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IV. 맺는 말

한·싱 FTA는 우리나라가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세계적인 FTA 물결에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되었다는 데 그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싱가폴은 아세안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한·싱 FTA는 금년부터 공식 협상이 개시되는 한·아세안 FTA의 발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주요내용 면에서 한·싱 FTA는 한·칠레 FTA와 관세양허안·세이프가드·원산지규정 등 여러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양국간의 교역구조·산업형태·경쟁력의 수준·지리적 특성 등에 있어서 싱가폴은 기본적으로 칠레와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총 11,261개 품목 중 91.6%인 10,315개 품

목에 대해 협정발효 이후 10년이내에 관세가 전면 철폐되어 양국간 자유무역증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반면, 국내민감 산업품목인 석유화학제품과 농수산물 등 946개 품목(8.4%)은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내산업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FTA로 인한 국내업계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였다.

원산지규정 관련,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인정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키로 하여 개성공단 물품의 해외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역외에서 싱가폴산 재료를 사용하여 중간 가공단계를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도 원산지기준을 확대해 주는 역외가공제도를 도입하여 싱가폴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역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원산지증명절차와 관련, 한·칠레 FTA와 달리 우회수입방지에 초점을 두어 원산지기판발급제 및 원산지입증책임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수입자의 원산지책임을 강화하였다.

한·싱 FTA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양국간 공식 서명과 국회비준 등의 등 협정발효에 필요한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한·싱 FTA의 효율적인 국내 시행을 위하여 동 협정의 주요내용을 국내관세법령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빠르면 금년 하반기 중에 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국내업계에서도 자유무역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장벽이 초기에 철폐되는 국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기술개발·싱가폴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새로운 기회 선점에 필요한 빌빠른 움직임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